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July 22,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 이전가격

#### 브라질: OECD 이전가격 지침서에 일치하는 이전가격 세제 도입

브라질이 2024년 1월부터 기존의 공식에 의한 배분 방법에서 ‘독립기업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OECD 이전가격 지침서에 큰 부분에서 일치하는 이전가격 세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브라질 납세자들은 2023 사업연도에 새로운 이전가격 세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이전가격 세제가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 1. 개요

브라질 의회는 2023년 6월 14일에 ‘독립기업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이전가격 세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전반적인 이전가격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지만, 세부 규정 및 “Nomative Instruction”이 어떻게 도입될지와 브라질 과세관청 (Receita Federal do Brasil, “RFB”)가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최종 Nomative Instruction 2,161/23은 아래와 같은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전가격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래 종류 (무형자산, 원가분담약정, 기업 재구성 등)

-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브라질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모델 조세조약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서 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 납세자가 분석대상 이전가격 거래의 정확한 구분 및 비교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
- 다양한 이전가격 방법론 (OECD 이전가격 지침서와 일치합니다)
- 분석대상 이전가격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상황 (브라질은 분석대상 이전가격 거래의 비세무적 목적이 결여되었을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저부가가치 영역의 간편 방법
- 납세자가 이전가격 조정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 및 방법
-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 및 관련 처벌 규정 (분석대상 이전가격 거래의 규모에 따라 간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 주요 특징

- 1) **손실이 발생한 비교가능회사:** Normative Instruction은 외부의 비교가능회사를 사용하여 다개년도 분석을 수행할 시 2년 이상 손실이 발생한 회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거래순이익률방법 (“TNMM”)을 사용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국가 리스크 조정:** Normative Instruction은 브라질 국내 비교가능회사의 사용을 권장하지만, 일정 수준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해외 비교가능회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Normative Instruction은 비교가능회사의 자본에 해당 비교가능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과 브라질의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의 차이를 적용하여 조정을 수행하는 예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비교가능회사의 영업이익에 적용되게 됩니다.
- 3) **독립성 요건:** RFB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20%를 상회하는 비교가능회사를 제외하도록 합니다. 총 비교가능회사가 4개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5%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여름 또는 가을에 새로운 Normative Instruction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특수한 거래들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방법뿐만 아니라 현행 기준에 대한 수정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스라엘: 지적재산권 가치평가 관련 판례](#)

텔아비브 지방법원은 2024년 6월 30일에 지적재산권(IP)의 가치평가 요소를 심층적으로 다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법원이 특정 가치 평가 매개변수와 평가 분석에 중점을 두고 판결을 내린 첫 사례로, 이 결정은 현지에서 논란이 많은 분야에 대해 이스라엘 과세관청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 1. 사건 개요

납세자는 2014년 미국에 소재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IP를 3,500만 달러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과세관청은 IP의 가치를 1억3,600만 달러로 평가하였으며, 해당 평가에 기반한 통지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판매된 IP와 관련하여 보다 광범위한 무형 자산의 세부 평가 요소를 포함하여, 해당 IP의 예상 유용 수명, 예상 성장률 등의 사실에 기반한 세부 가치 평가 요소였습니다.

텔아비브 지방법원은 논의된 각 분석적 요소에 대해 별도의 가치를 산정하여, 조정된 IP 평가액을 6,220만 달러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법인이 수취했어야 할 추가 수익에 대하여 간주이자를 부과하는 2차조정 처분도 유지하였습니다.

##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3 중 3452 (2024.05.13)

제목: 청구법인이 지출한 해외현지법인(100%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07.3.1. 설립되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중국 및 베트남에 각각 설립한 해외현지법인들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000원(이하 "쟁점인건비")을 지급한 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청구법인은 2022.7.8.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해외 고객사에 납품한 장비의 조립·설치, 시운전, 사후관리 용역(A/S) 등]가 청구법인을 위한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손금불산입한 쟁점인건비의 2019~2021사업연도 손금산입 등을 하여 법인세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0.31. 미환류소득 착오신고분에 대해서는 경정하였으나,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쟁점

① 청구법인이 지출한 해외현지법인(100%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p>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지고객사 요청에 따른 무상수리용역 등의 제공이 필수적인 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엔지니어들은 현지에서 본사의 업무를 수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법인과 해외 거래처와의 장비 납품계약 조건에는 '장·단기간 신체건강하고 경험 많고 숙련된 본사 엔지니어들을 파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li> <li>- 본사에서 제조된 장비는 모듈의 형태로 수출되며, 해외파견 직원들은 실제 고객사의 생산라인에 장비 부분품을 조립 및 설치, 시운전, 고객사 생산라인과의 연결성 검증, 품질검사 대응, 장비의 개조 및 유지보수(1년 무상, 20년 유상) 등의 업무를 수행함</li> <li>- 통상 장비 셋업(set-up)에 2년~3년, 사후관리(A/S 등)에 3년~4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바,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해외 파견은 필수적이고, 이들은 본사의 업무 지시와 관리·감독하에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에 대한 인사평가 등도 본사가 수행함</li> <li>-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이 A/S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파견 직원이 수행한 업무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① 파견 직원들의 주된 업무는 청구법인의 장비를 해외 현지에서 조립 및 설치, 시운전, 고객사 품질관리 대응 등이고 해외현지법인이 A/S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본사 파견 직원들이 이를 관리·감독하고 고객사와 협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처분청이 말하는 A/S 업무 또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점(장비공급계약 상, "청구법인은 판매된 장비에 대한 모든 기술적 문제가 즉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를 그 지점 또는 서비스센터에 파견하여야 한다") ③ 유사사례에서도 청구법인인 본사가 파견한 직원들이 본사가 판매한 기계장비에 대한 A/S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본사가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 목적이 A/S 업무라면 본사가 부담한 인건비를 본사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음</li> <li>-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목적이 청구법인이 판매한 장비에 대한 A/S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해외현지법인은 A/S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바, 해외현지법인의 수익 중 A/S와 관련한 수</li> </ul>	<p>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를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비납품계약서 등의 증명만으로는 파견 임직원들의 업무 중 어디까지가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인지, 해외현지법인을 위한 업무인지가 불분명</li> <li>- 파견 임직원들이 수행한 해외 현지에서의 장비 A/S 등 업무는 청구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이므로 이들의 인건비 또한 현지법인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li> <li>- 설령 파견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장비의 설치 및 A/S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 고유의 업무만을 위해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li> <li>- 해외현지법인의 법인격은 엄연히 독립된 것인바,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모회사의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모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모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비용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해외에 납품한 장비의 수리 등 장비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서 소요되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용에 비하여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li> <li>- 만약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면, 해외현지법인의 수익 중 A/S에 관련된 수익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파견 임직원들의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취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임</li> </ul>

<p>익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파견 임직원들이 수행한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수수료 등)를 수취하였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음</p>	
----------------------------------------------------------------------------------------------------------------------------------	--

#### 4) 판단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조심 2012 중 2416, 2014.5.28., 같은 뜻임),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중국 및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 및 A/S 를 제공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점, 청구법인과 고객사와의 장비납품계약서에서는 현지에서 장비를 조립, 설치 및 설치 이후의 무상 수리 보증 의무 등이 판매자인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책임에 따라 직원들을 현지에 파견하였고, 현지 파견 임직원들은 고객사에 납품한 장비의 설치 및 A/S 업무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파견 직원 품의서, 파견 직원이 청구법인에 보고한 문서, 역량평가 등 인사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하여 지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해외파견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중국 및 베트남 관련 부서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03 관세

**조심 2023 관 0098 (결정일자: 2024-04-22)**

**제목: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딜러사에게 판매한 부품 중 쟁점부품이 쟁점물품의 하자보증 무상수리에 사용된 경우, 청구법인이 딜러사로부터 청구 받은 쟁점부품 가격과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청구한 쟁점부품 가격의 차액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7.12.27.부터 2018.3.16.까지 일본 소재 A 주식회사(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호 등 12,244건으로 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

수입하여 딜러사들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쟁점물품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이후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무상으로 수리되었음.

- 한편, 딜러사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유상으로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자동차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하자보증 대상인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상으로 구매한 자동차 부품을 사용하여 우선 무상으로 수리하여 준 후, 무상수리에 사용된 부품(이하 "쟁점부품"이라 한다)의 구매가격과 공임(이하 "쟁점 공임"이라 하고, 쟁점부품의 구매가격과 합하여 "쟁점수리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를 보전 받았음.
- 청구법인은 딜러사들에게 쟁점수리금액을 우선 지급한 후, 쟁점부품의 수입가격과 당초 딜러사들에게 쟁점부품을 판매할 때 소요되었던 국내 운송비 등 제반 비용 및 쟁점 공임 등(이하 이 금액들을 합하여 "쟁점보전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수출자에게 청구하여 쟁점수출자로부터 이를 보전 받았음.
- 처분청은 2022.5.11.부터 2022.6.9.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물품의 무상수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선지급한 쟁점수리금액과 쟁점수출자로부터 보전 받은 쟁점보전금액과의 차액 〇〇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간접지급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22.12.27. 청구법인에게 3개월 이내에 관세부와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쟁점물품 636건(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세 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원, 개별소비세 〇〇원, 교육세 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원 합계 〇〇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3개월 이후에 관세부와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쟁점물품 〇〇건(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과세전 통지를 하였음.
- 청구법인은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2023.1.20.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23.3.14. 재조사 결정(이하 "쟁점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3.5.12. 청구법인에게 쟁점②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〇〇원, 개별소비세 〇〇원, 교육세 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원 합계 〇〇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쟁점①처분에 대해서는 2023.3.20. 이의신청을 거쳐) 202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쟁점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사온 쟁점부품가격(100)에 판매이윤(20)을 더하여 120에 쟁점부품을 딜러사에게 판매 후 무상 수리 시,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판매이윤 20 (이하 "쟁점금원")이 간접지급액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p><b>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 책임은 쟁점수출자에게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하자보증비가 포함되어 있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3년 또는 100,000km의 무상 하자보증 서비스(Warranty)를 제공하는데, 쟁점물품의 최종적인 하자보증 책임은 쟁점수출자에게 있고, 하자보증비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자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쟁점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자인 청구법인이나 실제 수리를 담당하는 딜러사 및 국내 소비자는 이 건 하자보증으로 인해 손익이 발생해서는 안됨.</li> <li>- 공임을 제외하고 쟁점부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하자보증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을 쟁점수출자로부터 100에 수입하여 ② 쟁점부품의 수입가격 100에 청구법인의 판매이윤 20을 가산하여 딜러사에게 120에 판매하였고, ③ 딜러사는 유상수리의 경우 해당 부품에 30의 이윤을 가산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150원에 판매하나, 하자보증 대상인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쟁점부품을 제공한 후 쟁점부품의 구매가격 120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으며, ④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의 수입가격 100을 쟁점수출자에게 청구하여 이를 보전받은 것임.</li> <li>- 위 쟁점금원 20은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면서 취득한 청구법인의 판매이익이고, 쟁점부품이 하자보증용으로 사용(국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될 경우 기 취득한 청구법인의 판매이익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 것으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없고, 쟁점부품의 판매로 인해 청구법인이 얻게 되는 이익도 없는바, 결국 청구법인이 하자보증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님.</li> <li>- 만일 하자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하자보증용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면 청구법인 또한 딜러사에게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딜러사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된 부품의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청구법인의 이익도 없게 되는바, 이는 이 건 하자보증 거래관계와 동일함.</li> <li>- 처분청은 위 예시에서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지급한 쟁점부품의 판매가격 120과 청구법인이 쟁점</li> </ul>	<p><b>쟁점금원은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함.</b></p> <p><b>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 책임은 쟁점수출자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하자보증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자보증은 물품에 내재된 숨겨진 하자 즉, 있어서는 안 되며 물품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하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함.</li> <li>-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에 체결된 '독점 대리점 계약서' 및 쟁점수출자의 '품질보증 정책 매뉴얼'에 따르면, 품질보증의 책임은 제품을 판매한 쟁점수출자(제조사)에게 있고, 그 비용은 쟁점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전적으로 쟁점수출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하자를 치유해야 할 의무가 있음.</li> <li>-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수출자의 대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에 따라 쟁점수출자의 보증정책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OO 그룹의 보증정책에 따라 국내에서 하자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쟁점수출자가 지정한 품질보증 서비스 의무를 대신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제조자인 쟁점수출자가 이를 보전해 줌.</li> <li>- 즉, 하자보증비용은 판매자인 쟁점수출자의 계산으로 지급되고, 지급 여부의 결정 등을 최종적으로 쟁점수출자가 결정함.</li> </ul> <p><b>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 대신 하자보증의무를 이행하고 쟁점수출자로부터 하자보증비용의 일부만을 보전받고 있는바, 쟁점수출자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쟁점금원은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예규에서 하자보증은 물품에 내재된 하자의 무상 치유이므로 하자보증비용은 물품 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미국 예규 542699)하고 있고, 「민법」 제580조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도 매도인의 의무로서 물품의 하자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li> <li>- 따라서 판매자는 하자보증 예상 비용을 물품의 가격에 반영하고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수리비용을 판매자 자신이 부담하는데, 통상 하자보증은 지리적.</li> </ul>

수출자로부터 보전받은 쟁점보전금액 100의 차액인 쟁점금원 20을 쟁점물품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음.

- 그러나 관세법령상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려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무상수리에 사용된 쟁점부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없고, 쟁점금원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과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재조사결정문에서도 인정된 바 있음.

- 처분청은 쟁점금원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는 위 예시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금원 20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20을 더 지급받게 되면 청구법인은 무상수리를 할 때마다 20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됨.

- 한편,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였고, 쟁점부품의 거래에 따른 판매차익은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면서 회계상 수익과 비용의 총액 표시 기준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한 쟁점금원은 하자보증비용으로서 판매자의 하자보증 의무를 일부 대신하고 있다는 의견임.

- 그러나 처분청 의견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한 쟁점금원은 당초 딜러사에게 쟁점부품을 유상으로 판매할 때 청구법인의 판매이익으로 계상하였다가, 사후에 쟁점부품이 무상 하자보증용으로 사용될 경우 이를 다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나 딜러사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부분임.

- 한편, 쟁점수출자의 Warranty Operations Manual 제4조에서 '변제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조건은 청구법인에게 이익이나 손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부품이 하자보중에 제공될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부품 판매 시 얻은 판매이익을 모두 딜러사에게 지급함으로써 이윤과 비용이 상쇄되고 결과적으로 쟁점수출자에게는 쟁점부품을 구매(수입)한 대금만 청구하고 있는 것임.

- 위와 같이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OO 그룹사의 보증정책에도 부합하지 않고, 무상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을 취급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움.

경제적인 이유 등에 의해 수입국에서 행해지고 이에 소요되는 부분품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함.

- 또한, 수입 후에 구매자가 지출한 하자보증비를 판매자가 보전해주는 것은 구매자의 하자보증비의 지출을 감소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음.

-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의무사항인 하자보증을 대신 수행하고 쟁점물품의 하자보중에 ① 부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부품 소요비용에 일부 금액만을 추가하여 쟁점수출자에게 하자보증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보전받으며, ② 부품이 소요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 발생한 모든 하자보증비용을 쟁점수출자에게 청구하여 보전 받고 있음.

- 이 건 거래 시 청구법인은 '전체 비용 먼저지급 - 일부 금액 後청구' 절차를 통해 제3자인 국내 딜러사들에게 지급한 하자보증비용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곧 쟁점수출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는 쟁점물품의 하자보증비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그 차액만큼 부담하는 것인 바, 쟁점금원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함.

#### 4) 판단

-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 체결한 '독점대리점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OO 그룹의 보증 정책 및 딜러를 위한 자료에 따라 품질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딜러들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 보증 정책 매뉴얼'에서 판매 제품의 제조자(쟁점수출자)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대리점(청구법인)은 본사에서 정한 하자 치유 방법으로 손상된 품질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 치유를 위해 대리점에서 사용한 비용은 제조자에 의해 보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구법인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유상으로 수입하여 그 수입가격에 청구법인의 판매이익을 가산하여 딜러사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데, 청구법인 및 딜러사는 자동차 수입 시는 물론 자동차 부품 수입 시에는 해당 수입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지 여부 및 해당 자동차 부품이 하자보증용으로 사용될지 여부를 알 수 없음.
- 사후적으로 기존의 유상거래 매출을 취소함으로써 애초부터 무상 수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것일 뿐 판매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하자보증비 일부를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부품 판매에 따른 이익인지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쟁점재조사결정을 하였음.
-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보증 책임을 청구법인이 대신 이행하고 쟁점금원을 제3자인 딜러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원이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 그러나 관세법령상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관세 가격에 합산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서의 '할인받은 금액'이나 '별도로 지급한 하자보증비 금액'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따라 수입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 가능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입 이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개별적·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증 수리비용 액수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8.8.22. 선고 2017누69375 판결 및 대법원 2021.5.6. 선고 2018두56619 판결, 같은 뜻임),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 책임이 쟁점수출자에게 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금원은 당초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판매이익인데, 딜러사가 쟁점물품을 하자보증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후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판매이익을 소멸시켜 쟁점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여 딜러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고, 이 건 하자보증과 관련하여 쟁점수출자나 청구법인 및 딜러사에게 추가적인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

않는 점, 달리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는 별개로 하자보증비용을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쟁점물품 수입 시 이미 확정된 수입가격에서 청구법인이 하자보증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원만큼을 할인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을 쟁점수출자를 대신하여 하자보증을 이행한 딜러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원이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수출자와 딜러사 간에 하자보증 이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그에 따른 하자보증 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계약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쟁점물품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Key Contacts

##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https://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https://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